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명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7

발의연월일: 2020. 6. 10.

발 의 자:이명수·성일종·박덕흠

김성원・홍문표・조경태

추경호 • 박성중 • 김희국

임이자 · 이채익 의원

(119)

제안이유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들의 경영상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.

이에 정부는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되도록 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여러 가지 재정·행정지원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 인하한 임대료의 80%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의 지원을 통하여 감염병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중소기업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(안 제 7조4항 신설).
- 나.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 인하한 임대료의 80%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(안 제96조의3제1항).
- 다. 기업이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자가격리,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에 그 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금액의 80%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(안 제 99조의13 신설).
- 라.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80을 경감함(안 제106조의11 신설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 는 세액을 감면한다.

제96조의3제1항 중 "2020년 6월 30일까지"를 "2021년 12월 31일까지"로, "50에"를 "80에"로 한다.

제99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9조의13(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유급휴가 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주로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발생 감시 등을 위하여 자가(自家) 격리, 자녀에 대한 돌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른 유급휴가(같은 법 제41조의2제3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해당 기업에 비용을 지원하는 유급휴가는 제외한다)를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 유급휴가 일수에 해당 근로자의 일급금액(1일당 13만원을 한도로 한다)을 곱

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일급금액의 산정, 세액공제의 신청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6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6조의11(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감면) ①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80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감면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, 감면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4항의 개

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.

- 제3조(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 례)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4조(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유급휴가 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99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5조(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106조의 11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7조(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제7조(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) ① ~ ③ (생 략) 감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 <신 설> 업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 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다. (5·6) (현행 제4항 및 제5항 ④·⑤ (생 략) 과 같음) 제96조의3(상가임대료를 인하한 | 제96조의3(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)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 산읶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(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 정한다)으로부터 2020년 1월 1 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-----2021년 12월 31일까지-(이하 이 조에서 "공제기간"이 라 한다)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 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-80예

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
②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 _____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99조의13(감염병 예방 등을 위 한 유급휴가 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주로서 <u>「감염병의</u>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|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발생 감시 등을 위하여 자가(自家) 격리, 자녀에 대한 돌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른 유급 휴가(같은 법 제41조의2제3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 는 지방자체단체가 해당 기업 에 비용을 지원하는 유급휴가 는 제외한다)를 근로자에게 주 는 경우에는 그 유급휴가일수 에 해당 근로자의 일급금액(1 일당 13만원을 한도로 한다)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 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 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.

<신 설>

-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일급금액의 산정, 세액공제의 신청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6조의11(소상공인의 부가가 치세 납부세액 감면) ① 「소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시 납부 할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80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감면한 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 을 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, 감면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
령으로 정한다.